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박진하* · 심호식**

〈요약〉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외부공시를 강화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배기구의 재무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령 개정 및 회계감사실무지침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선행연구는 주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예상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에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가를 조사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의 발생은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연도별 분석결과,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이 증가했던 2019년에 그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부정과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간의 연도별 분석은 표본선택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이 제도의 취지 및 회계감사실무지침과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여, 감사수행 단계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parkjh04@ssu.ac.kr, 주저자

** 국민대학교 재무금융·회계학부 부교수, hsshim@kookmi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4년 2월 7일 1차수정일 2024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9일

I. 서 론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전 부문에 큰 폭의 변화가 생겼다.¹⁾ 본 연구는 이 중 회계부정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외부감사법은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서 중대한 부정행위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의무 및 내부감사의 회계부정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20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기존에 수주산업에 적용되어 온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이 상장사 전체에 전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률 개정과 회계감사기준 개정의 목적은 지배기구의 재무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와 일관되게 선행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을수록 회계품질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종근·김갑순 2020 ; 김유진·홍지연 2021 ; 홍지연·김유진 2021). 하지만 법률 및 기준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뿐 아니라, 법률과 기준이 정한 바대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한 부정행위 발견 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회계품질 간의 관련성을 발견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즉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빈도가 회계품질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3일에 횡령·배임혐의발생 수시공시를 한 A사의 경우 2019년 사업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 17일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 ‘부정행위보고 및 관련법규 논의’가 다루어진 것을 포함 총 12회의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는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의 권고인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경영진 참석 배제)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을 공시한 회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횡령·배임이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전체 커뮤니케이션 중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연도별 분석결과, 앞서 보고한 회계부정과 커뮤니케이션 횟수와의 관련성은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제도가 시행된 첫째인 2018년에는 유의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했던 2019년에 가장 유의하였다. 그러나 회계부정과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간의 연도별 분석은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新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p.15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2018. 9. 17.(월).

표본 선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실무지침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검증한 첫 실증연구이다. 즉,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과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제도가 강화된 2018년과 그 이후를 구분한 연도별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2014년부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커뮤니케이션 실시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3년 후인 2016년에도 사업연도 기준 국내 상장사의 60% 이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연 2회 이하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2호, p.27~29). 2014~2018년 상장사 표본을 사용한 김종근과 김갑순(2020), 2014~2019년 상장사 표본을 사용한 김유진과 홍지연(2021), 홍지연과 김유진(2021)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횟수의 평균값이 각각 2.529, 2.584, 2.56이었으며, 중앙값은 모두 2회였다. 그러나 2018년 외감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및 2017년 12월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강조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화 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증진하도록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연도를 구분하여 이러한 법률 및 기준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지배구조개선 및 감사노력이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이성욱 등, 2014 ; 신혜정과 안정인, 2023). 본 연구는 감사인과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여 회계부정으로 훼손된 재무보고품질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감사인과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제도적 배경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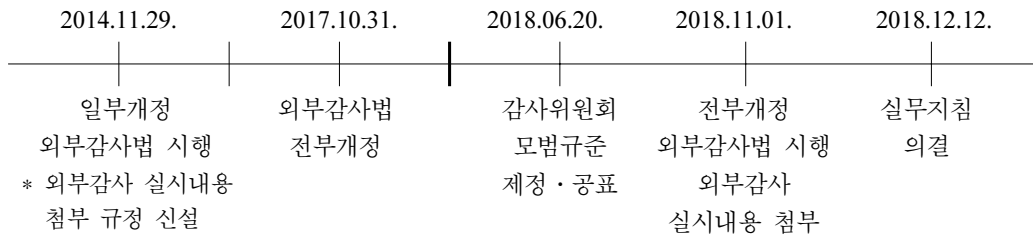
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제도적 배경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수행시기를 포함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하게 되었으며,²⁾ 2018년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커뮤니

2)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

케이션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림 1>은 2014년 외부감사 실시내용 첨부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률 및 기준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고한다.

〈그림 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도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은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부정행위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³⁾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하도록 하였다.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한 항목으로, 회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 4] 서식에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날짜, 그리고 더 상세하게는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전부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는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을 제정·공표하여 상장회사 지배기구(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가 그 역할과 책임

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3)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⁵⁾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경영진 참석 배제)을 권고하고 있다.⁶⁾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과 모범규준의 취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는 2018년 12월 12일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이하 ‘실무지침’)을 의결하였다. 기준위원회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는 실무지침의 목적, 적용시기,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때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절차에서는 감사기준서와 외부감사법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감사계약 단계, 감사계획 단계, 감사수행 단계, 감사종료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감사단계별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수행 단계 중 (b)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와, (c)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사건이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b)와 (c)는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중 ‘횡령·배임’ 공시와 ‘회계처리기준위반’ 공시의 존재여부로 측정한다.

<표 1> 감사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사항

단계	커뮤니케이션 사항
감사계약 단계	(a)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b)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c) 업무수행 이사의 신원 정보와 해당 역할
감사계획 단계	(a)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¹⁵ (b)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¹⁶ (c)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d)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e)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
감사수행 단계	(a)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b)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c)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d)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e)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상황(*) (f)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g)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2년 09월 (사)한국ESG기준원으로 개칭

6) KCGS,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감사 모범규준」 제정·공표. 2018년 6월 20일

〈표 1〉 감사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사항 (계속)

단계	커뮤니케이션 사항
감사종료 단계	(a)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b) 후속사건 (c)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d) 미수정왜곡표시 (e)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f)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g)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출처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pp.11~25

2.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가.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외부감사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각각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작성 및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감사인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의미하는 감사품질은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확률(전문성)과 이를 보고할 확률(독립성)의 결합확률로 정의된다(DeAngelo, 1981).

한편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는 기업의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내부통제, 내부신고제도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독 업무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계획 승인, 감사결과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다음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업무는 내부통제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을 감독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며, 이외에도 회사의 공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선행연구 역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계부정과 오류를 발견 및 보고할 수 있게 하도록 외부감사인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DeAngelo, 1981).

이처럼 외부감사인과 기업 내부의 감사기구 모두 회계오류 또는 부정을 적발 또는 감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 의사

소통은 감사품질 제고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게 된다(Cohen et al. 2002 ; Beasley et al. 2009). Fiolleau et al.(2019)은 실험 연구 및 감사법인 파트너 설문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 의사소통시 감사위원회의 회계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소통 스타일 등에 따라 의사소통 정보의 수준을 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히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형식적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질문 등 감사위원회의 감독접근 방식(oversight approach)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감사인이나 지배기구 각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관련 제도 도입시기 이후로 한정되어 아직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제 면에서, 대체로 지배구조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설명변수로 놓고 이에 따른 효과와 관련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시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김종근과 김갑순(2020)은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주요 논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홍유진과 김유진(2021)은 외부감사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상호소통 방식 중에서도 대면방식으로 소통할 때 이익의 질이 향상되며,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러한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유진과 홍지연(2021)은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이익반응계수(ERC)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서면회의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한 대면회의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 et al.(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면방식의 소통이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면, 온라인 회의, 유선, 서면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온라인 회의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됨을 발견하였다. 홍준용 등(2022)의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율과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항목이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논의일 경우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승재 등(2021)의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을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할수록 횡령 및 배임의 적발 가능성, 그리고 적발규모와 적발횟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가 주로 재무보고 품질 또는 감사품질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살펴본 것에 비해 이승재 등(2021)의 연구는 횡령·배임 등 실제 회계부정 사건의 적발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을 높였는지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더하여, 감사수행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나.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가설설정

선행연구에서는 회계부정이 회계품질, 투자자 신뢰 및 시장 반응, 그리고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박하연 등(2015)은 경영진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와 일관되게 횡령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이성욱 등(2014)은 횡령·배임 발생기업이 발표하는 보고이익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조사하여, 회계부정을 공시한 기업의 이익반응계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이익반응계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추가로, 횡령·배임이 적발된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클수록 보고이익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⁷⁾ 한편 감사인 측면에서, 신혜정과 안정인(2023)에 의하면 횡령·배임을 공시한 기업의 현장감사 관련 시차(결산일부터 현장감사 철수일의 차이 일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기업의 회계부정이 재무보고와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보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측면의 노력이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높이는데 유효하다면, 회계부정 공시기업이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기술한 이승재 등(2021)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을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의 실증분석 연구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실증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가 상관관계(correlation)인지 아니면 인과관계(causality)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causality vs. reverse-causality)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승재 등(2021)의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설명변수로, 횡령 및 배임 사건의 공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면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원인) 횡령 및 배임의 적발 가능성이 커질 것(결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횡령 및 배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부정의 발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정 사건이 발생한 뒤에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는 더 많은 조사의 축적이 필요하며, 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상호연관성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 상장사는 2019년 12월 13일에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201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총 12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권고인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경영진 참석 배제)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중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12월 13일 이전에는 두 차례(7월

7) 이성욱 등(2014)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로 기업지배구조 품질을 측정하였다.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1) 주주의 권리보호, (2) 이사회, (3) 공시, (4) 감사기구, (5) 경영과실배분이다.

31일 : 감사계획보고, 10월 31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경과보고)의 대면회의만이 있었고, 나머지 10회의 커뮤니케이션은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9년 12월 17일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 ‘부정행위보고 및 관련법규 논의’가 다루어진 것을 포함 ‘부정행위’, ‘부정조사’ 등 해당 사건과 연관된 주제가 주요 논의 내용이었던 회의가 총 9차례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는 내부고발 및 제보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며⁸⁾, 위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인 대책(부정조사 및 검찰 고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시행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령·배임 사건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경우 감사인과 지배구조가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 활발히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살펴본다.⁹⁾ 먼저 가설 1-1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횟수 측면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다. 다만 감사계획 단계에서 (a)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b)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c)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를 논의함에 따라, 감사수행 단계에서 회계부정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감사계획 안에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연구 가설을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1-1 : 회사의 회계부정 발생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가설 1-2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측면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서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본다.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국내 연구의 경우,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대면 방식으로 소통할 때 재무보고품질이 더 높으며(홍유진·김유진 2021),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대면회의에 국한되어 나타나고(김유진·홍지연 2021), 비디오회의가 감사품을 낮춘다(Cho et al. 2022)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해외 연구의 경우 감사분야에서 감사방식에 대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는데, Brazel et al.(2004)은 개별 감사인의 감사 리뷰에 초점을 둔 실험연구로 대면 리뷰를 준비하는

8)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포상.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8>

9) 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재 등(202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을 적발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회계부정과 동 커뮤니케이션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공시시점과 커뮤니케이션 일시 및 회의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본문에 기재한 사례와는 달리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들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에 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은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경우 전산 리뷰를 준비하거나 리뷰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감사의 효과성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높은 품질의 판단을 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대신 업무에 있어 덜 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Lynch et al.(2009)은 감사팀의 부정 논의¹⁰⁾를 설정한 실험연구에서 전산을 이용한 논의가 대면논의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감사 활동 종류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을 공시한 경우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연구 가설을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1-2 : 회사의 회계부정 발생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기간을 도입 초기와 이후로 구분하였다. 즉 회계부정의 발생과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 간의 관계가 제도 도입 초기와 그 이후에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경우 대면활동에 제약을 가져온 COVID19 팬데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가설 2-1과 2-2는 가설 1-1 및 1-2와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가설 2-1 : 회사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사이의 관계는 연도별로 차이가 없다.

가설 2-2 : 회사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사이의 관계는 연도별로 차이가 없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 1-1과 1-2는 회사의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방식)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식(1)을 설정하였다.

10)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SAS) No. 99, Consideration of Fraud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 (AICPA 2002)

$$COOM_{it} = \beta_0 + \beta_1 AQ1_{it} + \beta_2 AQ2_{it} + \beta_3 SIZE_{it-1} + \beta_4 INVREC_{it-1} + \beta_5 LOSS_{it-1} + \beta_6 LEV_{it-1} \\ + \beta_7 ROA_{it-1} + \beta_8 CACL_{it-1} + \beta_9 ISSUE_{it-1} + \beta_{10} BIG4_{it} + \beta_{11} CHANGE_{it} \\ + \beta_{12} SGROWTH_{it-1} + \beta_{13} LARGE_{it} + \beta_{14} FOREIGNP_{it} + Year \& Industry \ FE + \varepsilon_t \quad (1)$$

COMM

<i>TOTAL_COMM</i>	=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 ;
<i>F2F_RATIO</i>	=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총 커뮤니케이션 ;
<i>AQ1</i>	= 횡령·배임 수시공시를 했으면 1, 아니면 0 ;
<i>AQ2</i>	= 회계처리기준위반등 수시공시를 했으면 1, 아니면 0 ;
<i>SIZE</i>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i>INVREC</i>	= (재고자산+매출채권)/전기 총자산 ;
<i>LOSS</i>	=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1, 아니면 0 ;
<i>LEV</i>	= 총부채/총자산 ;
<i>ROA</i>	= 당기순이익/총자산 ;
<i>CACL</i>	= 유동자산/유동부채 ;
<i>ISSUE</i>	= 자본금이 전기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
<i>BIG4</i>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i>CHANGE</i>	=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면 1, 아니면 0 ;
<i>SGROWTH</i>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i>LARGE</i>	= 최대주주 지분율 ;
<i>FOREIGNP</i>	= 외국인주주 지분율.

식(1)에서 종속변수인 *TOTAL_COMM*은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의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이고, *F2F_RATIO*는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이다. 식(1)의 관심변수는 회계부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AQ1*과 *AQ2*로, *AQ1*은 한국거래소 KINDS 수시공시에 횡령·배임 수시공시를 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고, *AQ2*는 회계처리기준위반등 수시공시를 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¹¹⁾ 만약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다면, *AQ1*과 *AQ2*의 계수인 β_1 과 β_2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도의 취지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규모(*SIZE*),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INVREC*), 손실발생 여부(*LOSS*), 부채비율(*LEV*), 수익성(*ROA*), 유동비율(*CACL*), 자본금의 증가(*ISSUE*), 대형감사인의 감사 여부(*BIG4*), 감사인교체 여부(*CHANGE*), 매출액변화

11) 횡령·배임 공시에서 횡령·배임의 대상자는 회장, 대표이사, 임원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는데, 횡령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의하면, 감사수행 단계 중 ‘(b)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를 커뮤니케이션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표본의 횡령·배임 공시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가 직원인 경우는 2개의 기업-연도였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지 않았으며, 강건성 분석에서 이를 제외해도 결과는 본 분석과 일관되었다.

을(*SGROWTH*), 최대주주 지분율(*LARGE*), 그리고 외국인지분율(*FOREIGNP*)을 통제하였다 (Choi et al. 2010 ; Eshleman and Guo 2014 ; Cho et al. 2017 ; 전규안 · 박종일 2017).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형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아직 없으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감사노력과 감사품질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의 결정요인인 기업 규모, 복잡성, 위험, 감사인의 특성, 그리고 소유구조가 커뮤니케이션 횟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SIZE*를 포함하였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의 복잡성을 통제하기 위해 *INVREC*를 포함하였으며, 복잡성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으로 피감기업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손실여부(*LOSS*), 부채비율(*LEV*), 수익성(*ROA*), 유동비율(*CACL*) 변수를 포함하였다.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커져서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좋고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작아져서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대형 회계법인 감사 여부(*BIG4*)와 감사인 교체여부(*CHANGE*)를 포함하였다. 또한, 자본조달이나 성장성이 커뮤니케이션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자여부(*ISSUE*)와 매출액증가율(*SGROWTH*) 변수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를 통제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지분율(*LARGE*) 및 외국인지분율(*FOREIGNP*)을 통제하였다. 한편 이들 통제변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종속변수가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인 *F2F_RATIO*인 경우에도 동일한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2-1과 2-2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방식) 사이의 관계가 2019년도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는 조사한다. 따라서 전체표본을 2018년 표본과 2019년 표본 및 2019년 이후 표본으로 구분하여 식(1)을 검증한다.

2. 변수의 설정

다음 <표 2>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 4] 서식에 따라 B 상장사가 2021년에 공시한 커뮤니케이션 실시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서식에 공시된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방식을 수집하여 *TOTAL_COMM*과 *F2F_RATIO*를 측정하였다.¹²⁾ 이에 따라 아래 예시의 경우 *TOTAL_COMM*은 4회로, *F2F_RATIO*는 1(=대면회의 4회/총회의 4회)로 계산된다.

12) 자료를 수집할 때,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서식의 횟수를 기재하고, 방식은 대면, 서면, 화상회의,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여러 방식이 동시에 기재된 경우 혹은 대면, 서면, 화상회의 이외의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코딩하였다 : (1) 한 회의에 대해 대면과 서면이 같이 있는 경우 대면으로 코딩 (셀트리온 2019 등), (2)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대면으로 코딩 (HLB 2020 등), (3) e-mail, 유선, 구두, 비대면보고는 서면으로 코딩 (SK네트웍스 2019), (4) 컨퍼런스콜 및 비대면회의는 화상회의로 코딩 (LG전자 2019 등)

〈표 2〉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¹⁾	일자	참석자 ²⁾	방식 ³⁾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04월 27일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회사 : 감사팀장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연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연간 회계감사 일정 계획 분기 검토 경과 및 비감사업무 독립성 확인
2	2021년 07월 27일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회사 : 감사팀장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연간 감사계획 및 진행 상황 핵심감사사항 선정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분기 중점 검토사항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3	2021년 10월 26일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회사 : 감사팀장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연간 감사계획 및 진행 상황 핵심감사사항 선정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분기 중점 검토사항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4	2022년 01월 25일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회사 : 감사팀장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
- 2) ‘참석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 각각에 대해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기재
- 3)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

3.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기업을 표본으로 한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감사보고서에서 직접 수집하였으며,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 등 공시는 한국거래소 KINDS의 수시공시에서 추출하였다. 이외에 연구에 사용한 재무자료 등은 FnGuide의 DataGuide5에서 추출하였다.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총자산 및 총자본이 결측치이거나 음(-)의 값을 갖는 관측치를 제외하였으며, 식(1)의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없는 관측치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최종 표본은 2,670 기업-연도이다. 다음 <표 3>은 표본의 선정 과정을 보고한다.

〈표 3〉 표본의 선정

표본선정 기준	기업-연도
2018~2021년 기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월 결산 비금융업)	2,843
(-) 총자산 및 총자본이 결측치이거나 음(-)의 값을 갖는 관측치 제외	(11)
(-)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없는 관측치 제외	(162)
최종 표본	2,670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4>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표 4> 기술통계량

변수	mean	sd	min	p25	p50	p75	max
<i>TOTAL_COMM</i>	3.244	1.408	1	2	3	4	13
<i>F2F_RATIO</i>	0.505	0.426	0	0	0.5	1	1
<i>AQ1</i>	0.028	0.164	0	0	0	0	1
<i>AQ2</i>	0.006	0.080	0	0	0	0	1
<i>SIZE</i>	20.441	1.556	17.586	19.335	20.222	21.352	24.926
<i>INVREC</i>	0.264	0.148	0.010	0.154	0.250	0.355	0.706
<i>LOSS</i>	0.270	0.444	0	0	0	1	1
<i>LEV</i>	0.463	0.201	0.068	0.306	0.473	0.614	0.900
<i>ROA</i>	0.013	0.073	-0.312	-0.004	0.021	0.048	0.175
<i>CACL</i>	2.002	2	0.334	0.968	1.388	2.098	13.298
<i>ISSUE</i>	0.098	0.297	0	0	0	0	1
<i>BIG4</i>	0.590	0.492	0	0	1	1	1
<i>CHANGE</i>	0.222	0.416	0	0	0	0	1
<i>SGROWTH</i>	0.069	0.277	-0.624	-0.054	0.033	0.137	1.661
<i>LARGE</i>	0.445	0.162	0.080	0.332	0.456	0.557	0.802
<i>FOREIGNP</i>	0.098	0.118	0	0.019	0.051	0.128	0.586

- 1) 변수의 정의 : *TOTAL_COMM*=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 ; *F2F_RATIO*=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총 커뮤니케이션 ; *AQ1*=횡령·배임 수시공시를 했으면 1, 아니면 0 ; *AQ2*=회계처리기준위반등 수시공시를 했으면 1, 아니면 0 ;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전기 총자산 ; *LOSS*=당기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1, 아니면 0 ; *LEV*=총부채/총자산 ; *ROA*=당기순이익/총자산 ; *CACL*=유동자산/유동부채 ; *ISSUE*=자본금이 전기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 *BIG4*=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CHANGE*=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면 1, 아니면 0 ; *SGROWTH*=(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LARGE*=최대주주 지분율 ; *FOREIGNP*=외국인주주 지분율.
- 2) 본 연구의 표본은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다. 표본선정과정 후 최종표본은 3,364개 기업-연도이며, 이상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는 변수별로 표본의 상·하위 1%를 조정(winsorize)하였다.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TOTAL_COMM*)의 평균은 3.244회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4회(분기별 1회)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F2F_RATIO*)의 평균은 0.505로, 대면 이외의 방식인 서면이나 화상 커뮤니케이션도 상당 수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수시공시 여부(*AQ1*)와 회계처리기준위반등 수시공시 여부(*AQ2*)의 평균은 각각 0.028, 0.006이다.

다음으로 <표 5>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회계부정 공시의 연도별 추이를 보고한다. <표 5>의 패널 A에 따르면,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TOTAL_COMM*)는 2018년 평균 2.883회에서 2019년 3.244회로 대폭 증가한 후, 2020-2021년 기간에도 3.413회, 3.426회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¹³⁾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F2F_COMM*)은 2019년에는 평균 54.7%였으나, COVID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50.0%, 45.2%로 감소하여, 시기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5>의 패널 B에 따르면 횡령·배임(*AQ1*) 및 회계처리기준위반 공시(*AQ2*)는 표본기간 동안 대체로 감소하였다.

<표 5> 커뮤니케이션과 회계부정 공시의 연도별 추이

패널 A : 연도별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의 평균				
구분	2018	2019	2020	2021
<i>TOTAL_COMM</i> (횟수)	2.883	3.244	3.413	3.426
<i>F2F_COMM</i> (횟수)	1.693	1.927	1.915	1.753
<i>F2F_RATIO</i> (비율)	52.3%	54.7%	50.0%	45.2%
패널 B : 연도별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등 횟수 및 발생비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i>AQ1</i> (횟수)	21	21	14	18
<i>AQ2</i> (횟수)	7	7	2	1
<i>AQ1</i> (발생비율)	3.2%	3.1%	2.1%	2.7%
<i>AQ2</i> (발생비율)	1.1%	1.0%	0.3%	0.1%

1) 변수의 정의는 <표 4> 참조

13) 삼성 KPMG. 2020. 감사위원회 저널 16호 中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2018, 2019회계연도 비교).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에 대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8년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비교하였을 때, 2019년 4.54회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음. 2018 회계연도에는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4회(분기별 1회)에 근접하였으며, 2019 회계연도에는 4.54회로 증가하며 감독 방향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

다음 <표 6>은 회계부정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 및 차이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회계 부정 공시 표본의 경우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TOTAL_COMM*)와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F2F_RATIO*)의 평균이 모두 회계부정 사건이 미발생한 표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추가로 회계부정 공시 표본은 기업 특성 측면에서, 기업규모(*SIZE*)가 더 크고 손실(*LOSS*) 발생이 많았으며, 부채비율(*LEV*)은 높고 수익성(*ROA*), 유동비율(*CACL*), 성장성(*SGROWTH*)은 낮았다. 한편, 회계부정 공시 표본에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비용(*BIG4*)이 높고, 감사인 교체(*CHANGE*)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회계부정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회계부정 미공시 표본 N=2,583	회계부정 공시 표본 N=87	차이검증 회계부정 미공시 표본 vs 회계부정 공시 표본
	mean	mean	t-test
<i>TOTAL_COMM</i>	3.209	4.264	-4.6789***
<i>F2F_RATIO</i>	0.498	0.711	-5.3006***
<i>SIZE</i>	20.406	21.485	-4.7307***
<i>INVREC</i>	0.266	0.191	5.9758***
<i>LOSS</i>	0.266	0.402	-2.5441**
<i>LEV</i>	0.461	0.533	-2.9944***
<i>ROA</i>	0.014	-0.011	2.4859**
<i>CACL</i>	2.017	1.550	4.0182***
<i>ISSUE</i>	0.098	0.080	0.5976
<i>BIG4</i>	0.584	0.759	-3.6990***
<i>CHANGE</i>	0.220	0.310	-1.7970*
<i>SGROWTH</i>	0.072	-0.012	3.4080***
<i>LARGE</i>	0.447	0.384	3.2350***
<i>FOREIGNP</i>	0.097	0.135	-2.4973**

1) 변수의 정의는 <표 4> 참조

2. 상관관계분석

다음으로 <표 7>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고하고 있다.

〈표 7〉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i>TOTAL_COMM</i>	1															
(2) <i>F2F_RATIO</i>	0.31 ^{***}	1														
(3) <i>AQ1</i>	0.13 ^{***}	0.09 ^{***}	1													
(4) <i>AQ2</i>	0.03	0.02	0.10 ^{***}	1												
(5) <i>SIZE</i>	0.49 ^{***}	0.20 ^{***}	0.14 ^{***}	-0.02	1											
(6) <i>IN/REC</i>	-0.17 ^{***}	-0.13 ^{***}	-0.09 ^{***}	-0.01	-0.23 ^{***}	1										
(7) <i>LOSS</i>	-0.04 ^{**}	-0.01	0.05 ^{***}	0.01	-0.19 ^{***}	-0.11 ^{***}	1									
(8) <i>LEV</i>	0.11 ^{***}	0.04 ^{**}	0.06 ^{***}	0.05 ^{***}	0.22 ^{***}	0.10 ^{***}	0.28 ^{***}	1								
(9) <i>ROA</i>	0.03	0.01	-0.06 ^{***}	-0.01	0.21 ^{***}	0.13 ^{***}	-0.70 ^{***}	-0.34 ^{***}	1							
(10) <i>CACL</i>	-0.09 ^{***}	-0.05 ^{**}	-0.04 ^{**}	-0.01	-0.19 ^{***}	-0.08 ^{***}	-0.14 ^{***}	-0.65 ^{***}	0.16 ^{***}	1						
(11) <i>ISSUE</i>	0.01	0.02	-0.00	-0.03	-0.10 ^{***}	0.02	0.20 ^{***}	0.10 ^{***}	-0.26 ^{***}	-0.05 ^{**}	1					
(12) <i>BIG4</i>	0.18 ^{***}	-0.15 ^{***}	0.06 ^{***}	0.02	0.48 ^{***}	-0.03 [*]	-0.13 ^{***}	0.07 ^{***}	0.12 ^{***}	-0.10 ^{***}	-0.10 ^{***}	1				
(13) <i>CHANGE</i>	-0.02	0.03	0.04 [*]	0.03	-0.15 ^{***}	-0.02	0.13 ^{***}	0.04 ^{**}	-0.14 ^{***}	-0.02	0.12 ^{***}	-0.24 ^{***}	1			
(14) <i>SGROWTH</i>	-0.01	-0.01	-0.05 ^{***}	-0.03	0.07 ^{***}	0.21 ^{***}	-0.20 ^{***}	-0.00	0.23 ^{***}	-0.04 ^{***}	0.08 ^{***}	0.02	-0.06 ^{***}	1		
(15) <i>LARGE</i>	-0.05 ^{***}	-0.11 ^{***}	-0.06 ^{***}	-0.04 ^{**}	0.03	-0.01	-0.14 ^{***}	-0.08 ^{***}	0.14 ^{***}	-0.00	-0.18 ^{***}	0.10 ^{***}	-0.06 ^{***}	0.02	1	
(16) <i>FOREIGNP</i>	0.28 ^{***}	0.20 ^{***}	0.07 ^{***}	-0.03	0.51 ^{***}	-0.10 ^{***}	-0.21 ^{***}	-0.14 ^{***}	0.23 ^{***}	0.10 ^{***}	-0.14 ^{***}	0.29 ^{***}	-0.11 ^{***}	0.02	-0.20 ^{***}	1

1) 변수의 정의는 <표 4> 참조

2)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 10% 5%, 1%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

먼저 횡령·배임 여부를 측정된 *AQ1*의 경우 총커뮤니케이션 횟수(*TOTAL_COMM*)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F2F_RATIO*) 변수와 각각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각각 0.13, 0.09). 한편, 회계처리기준위반 공시 여부를 측정된 *AQ2* 변수의 경우에는 위 변수들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7>은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 결과는 통제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상관관계에 불과하므로 다음 분석절차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가설의 검증

<표 8>은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 여부와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열(1)~열(3) 모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나타내는 *AQ1* 및 회계처리기준위반 여부를 나타내는 *AQ2*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 이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규모(*SIZE*), 자본조달 여부(*ISSUE*), 그리고 외국인지분율(*FOREIGNP*)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높이는 요인에 관한 예측과 일관되었다.

<표 8>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변수	(1) <i>TOTAL_COMM</i>	(2) <i>TOTAL_COMM</i>	(3) <i>TOTAL_COMM</i>
<i>AQ1</i>	0.393*** (2.72)	0.427*** (2.97)	
<i>AQ2</i>	0.694** (2.36)		0.773*** (2.64)
<i>SIZE</i>	0.464*** (20.52)	0.461*** (20.43)	0.470*** (20.90)
<i>INVREC</i>	-0.282 (-1.51)	-0.294 (-1.57)	-0.300 (-1.60)
<i>LOSS</i>	-0.005 (-0.07)	-0.005 (-0.07)	-0.002 (-0.03)
<i>LEV</i>	-0.304* (-1.71)	-0.278 (-1.56)	-0.315* (-1.76)
<i>ROA</i>	-1.380*** (-2.88)	-1.351*** (-2.82)	-1.435*** (-2.99)

<표 8>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계속)

변수	(1) <i>TOTAL_COMM</i>	(2) <i>TOTAL_COMM</i>	(3) <i>TOTAL_COMM</i>
<i>CACL</i>	-0.017 (-1.13)	-0.016 (-1.06)	-0.018 (-1.15)
<i>ISSUE</i>	0.188** (2.25)	0.182** (2.17)	0.185** (2.20)
<i>BIG4</i>	-0.102* (-1.83)	-0.097* (-1.73)	-0.101* (-1.81)
<i>CHANGE</i>	0.074 (1.23)	0.078 (1.29)	0.083 (1.38)
<i>SGROWTH</i>	-0.123 (-1.35)	-0.127 (-1.39)	-0.131 (-1.43)
<i>LARGE</i>	-0.177 (-1.13)	-0.195 (-1.25)	-0.199 (-1.27)
<i>FOREIGNP</i>	0.552** (2.13)	0.536** (2.06)	0.553** (2.13)
Constant	-6.263*** (-11.30)	-6.219*** (-11.22)	-6.370*** (-11.51)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Observations	2,670	2,670	2,670
Adjusted R-squared	0.287	0.286	0.285

1) 변수 정의는 <표 4> 참조

2) 괄호 안은 t-통계량임. *** $p < 0.01$, ** $p < 0.05$, * $p < 0.1$

다음으로 <표 9>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 여부와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횡령·배임 여부를 나타내는 *AQ1*는 열(1)–열(2)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이나, 회계처리기준위반 여부를 나타내는 *AQ2*의 경우에는 *F2F_RATIO*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및 배임사건은 회사 내부통제에 중대한 결함을 의미하고 향후 회계처리위반사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회계처리위반사항에 비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할 수 있다.

〈표 9〉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변수	(1) <i>F2F_RATIO</i>	(2) <i>F2F_RATIO</i>	(3) <i>F2F_RATIO</i>
<i>AQ1</i>	0.123*** (2.60)	0.128*** (2.72)	
<i>AQ2</i>	0.101 (1.05)		0.126 (1.31)
<i>SIZE</i>	0.076*** (10.28)	0.076*** (10.24)	0.078*** (10.60)
<i>INVREC</i>	-0.136** (-2.22)	-0.138** (-2.25)	-0.142** (-2.31)
<i>LOSS</i>	-0.014 (-0.56)	-0.014 (-0.57)	-0.013 (-0.52)
<i>LEV</i>	-0.036 (-0.62)	-0.033 (-0.56)	-0.040 (-0.68)
<i>ROA</i>	-0.070 (-0.45)	-0.066 (-0.42)	-0.087 (-0.56)
<i>CACL</i>	-0.012** (-2.41)	-0.012** (-2.38)	-0.012** (-2.43)
<i>ISSUE</i>	0.037 (1.36)	0.036 (1.33)	0.036 (1.32)
<i>BIG4</i>	-0.284*** (-15.49)	-0.283*** (-15.46)	-0.284*** (-15.46)
<i>CHANGE</i>	-0.005 (-0.28)	-0.005 (-0.25)	-0.003 (-0.13)
<i>SGROWTH</i>	0.005 (0.18)	0.005 (0.16)	0.003 (0.10)
<i>LARGE</i>	-0.104** (-2.03)	-0.107** (-2.09)	-0.111** (-2.16)
<i>FOREIGNP</i>	0.491*** (5.77)	0.489*** (5.75)	0.491*** (5.77)
Constant	-0.770*** (-4.24)	-0.764*** (-4.21)	-0.804*** (-4.43)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Observations	2,670	2,670	2,670
Adjusted R-squared	0.165	0.165	0.163

1) 변수 정의는 <표 4> 참조

2) 괄호 안은 t-통계량임. *** $p < 0.01$, ** $p < 0.05$, * $p < 0.1$

<표 10>과 <표 11>은 가설 2-1과 가설 2-2에 따라 표본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19년 이후의 연도별로 구분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표 10>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나타내는 *AQ1* 변수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총 커뮤니케이션 횟수 사이의 관계는 열(1)의 2018년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열(2)의 2019년 표본과 열(3)의 2019년 이후 표본에서 유의하였다. 2018년 11월 외감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공시 항목이 확대된 후, 일련의 입법과 모범규준의 취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준위원회는 실무지침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 개정의 효과가 시행 첫해인 2018년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절차를 감사단계별로 제시한 실무지침마련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 10>의 결과는 이처럼 일련의 노력이 더해짐에 따라 감사수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됨을 시사한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19년을 포함한 이후 연도의 *AQ1* 변수의 계수가 작은 것은 2020년부터 횡령배임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열(4)에서 2020년 이후 표본에 대해 분석한 결과, *AQ1* 변수의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열(2)에 비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이 증가했던 2019년에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의 관련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계처리기준위반 여부를 나타내는 *AQ2*의 계수는 모형(1)의 2018년 표본에서만 유의하였다.¹⁴⁾

<표 10>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 연도별 분석

변수	(1) <i>TOTAL_COMM</i> if year = 2018	(2) <i>TOTAL_COMM</i> if year = 2019	(3) <i>TOTAL_COMM</i> if year ≥ 2019	(4) <i>TOTAL_COMM</i> if year ≥ 2020
<i>AQ1</i>	-0.110 (-0.41)	1.018*** (3.79)	0.617*** (3.61)	0.380* (1.69)
<i>AQ2</i>	2.231*** (5.00)	-0.083 (-0.18)	-0.346 (-0.90)	-0.697 (-0.98)
<i>SIZE</i>	0.485*** (10.89)	0.496*** (10.92)	0.457*** (17.55)	0.442*** (13.88)
<i>INVREC</i>	0.475 (1.33)	-0.157 (-0.40)	-0.507** (-2.33)	-0.623** (-2.36)

14) 이와 관련하여 공시를 구분하면, 2018년에는 7건 중 6건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공시지만, 2019년에는 7건 모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로 이미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결과와 공시였다. 따라서, 모형(1)의 2018년 표본에서만 *AQ2*의 결과가 유의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공시가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표 5>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과 2021년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기사 각각 1회에 불과하여, 모형(3)에서 2020-2021년 *AQ2*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표 10〉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 연도별 분석 (계속)

변수	(1) TOTAL_COMM if year = 2018	(2) TOTAL_COMM if year = 2019	(3) TOTAL_COMM if year ≥ 2019	(4) TOTAL_COMM if year ≥ 2020
LOSS	0.311** (2.17)	0.124 (0.87)	-0.109 (-1.28)	-0.236** (-2.21)
LEV	-0.374 (-1.04)	-0.831** (-2.35)	-0.289 (-1.42)	-0.078 (-0.31)
ROA	0.576 (0.58)	-1.841** (-2.02)	-1.860*** (-3.41)	-2.058*** (-2.99)
CACL	-0.018 (-0.59)	-0.050 (-1.61)	-0.016 (-0.88)	-0.001 (-0.04)
ISSUE	0.455*** (2.81)	0.428** (2.31)	0.118 (1.21)	0.044 (0.38)
BIG4	-0.374*** (-3.46)	-0.054 (-0.47)	-0.026 (-0.40)	-0.020 (-0.25)
CHANGE	0.178 (1.39)	0.089 (0.70)	0.083 (1.21)	0.076 (0.93)
SGROWTH	-0.174 (-0.95)	-0.142 (-0.76)	-0.131 (-1.23)	-0.145 (-1.10)
LARGEP	-0.018 (-0.06)	-0.187 (-0.60)	-0.254 (-1.41)	-0.246 (-1.10)
FOREIGNP	0.115 (0.23)	0.520 (1.01)	0.720** (2.38)	0.857** (2.29)
Constant	-7.182*** (-6.59)	-6.261*** (-5.68)	-5.630*** (-8.79)	-5.304*** (-6.69)
Year fixed effect	—	—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57	667	2,013	1,346
Adjusted R-squared	0.254	0.310	0.289	0.276

1) 변수 정의는 <표 4> 참조

2) 괄호 안은 t-통계량임. *** $p < 0.01$, ** $p < 0.05$, * $p < 0.1$

다음으로 <표 11>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나타내는 *AQI* 변수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사이의 관계는 열(1)의 2018년 표본과 열(2)의 2019년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열(3)의 2019년 이후 표본에서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표본을 분석한 열(4)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표 5>에 의하면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F2F_COMM*)은 2019년에 높아졌다가, COVID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감소 추이를 보인다. 따라서, <표 11>의 결과는 회계부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대면 방식이 선호될 수 있으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 연도별 분석

변수	(1) <i>F2F_RATIO</i> if year = 2018	(2) <i>F2F_RATIO</i> if year = 2019	(3) <i>F2F_RATIO</i> if year ≥ 2019	(4) <i>F2F_RATIO</i> if year ≥ 2020
<i>AQ1</i>	0.114 (1.27)	0.122 (1.45)	0.111** (2.00)	0.114 (1.53)
<i>AQ2</i>	0.193 (1.30)	0.115 (0.80)	0.060 (0.48)	0.037 (0.16)
<i>SIZE</i>	0.096*** (6.51)	0.088*** (6.17)	0.070*** (8.30)	0.061*** (5.83)
<i>INVREC</i>	-0.042 (-0.36)	-0.243** (-1.97)	-0.166** (-2.34)	-0.152* (-1.73)
<i>LOSS</i>	-0.034 (-0.72)	-0.096** (-2.15)	-0.008 (-0.30)	0.037 (1.04)
<i>LEV</i>	-0.112 (-0.94)	-0.006 (-0.05)	-0.015 (-0.22)	-0.011 (-0.13)
<i>ROA</i>	0.166 (0.50)	-0.436 (-1.53)	-0.120 (-0.68)	0.007 (0.03)
<i>CACL</i>	-0.010 (-1.01)	-0.011 (-1.11)	-0.012** (-2.07)	-0.013* (-1.84)
<i>ISSUE</i>	0.085 (1.59)	0.083 (1.44)	0.028 (0.88)	0.008 (0.20)
<i>BIG4</i>	-0.482*** (-13.39)	-0.366*** (-10.32)	-0.221*** (-10.40)	-0.152*** (-5.75)
<i>CHANGE</i>	0.038 (0.89)	0.002 (0.05)	-0.001 (-0.05)	-0.002 (-0.07)
<i>SGROWTH</i>	0.069 (1.14)	-0.083 (-1.43)	-0.025 (-0.71)	-0.001 (-0.03)
<i>LARGEP</i>	-0.068 (-0.66)	-0.040 (-0.41)	-0.119** (-2.02)	-0.143* (-1.93)
<i>FOREIGNP</i>	0.398** (2.41)	0.516*** (3.20)	0.504*** (5.11)	0.499*** (4.03)
Constant	-1.143*** (-3.16)	-1.072*** (-3.12)	-0.649*** (-3.11)	-0.452* (-1.72)
Year fixed effect	—	—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57	667	2,013	1,346
Adjusted R-squared	0.271	0.223	0.141	0.101

1) 변수 정의는 <표 4> 참조

2) 괄호 안은 t-통계량임. *** $p < 0.01$, ** $p < 0.05$, * $p < 0.1$

4. 강건성분석

t기 1분기(1월-3월)에는 아직 t-1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t기 1분기에 공시된 회계부정은 t-1기 혹은 t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1분기에 회계부정을 공시한 관측치를 제거하고 가설을 분석하고, 결과를 <표 12>에 보고하였다. 강건성분석 결과는 <표 8>부터 <표 11>까지의 결과와 일관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표 12>의 패널 D의 연도별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분석결과이다. t기와 t+1기 양 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분기 관측치를 제외한 결과,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표 11>의 결과와 달리 열(4)의 2020~2021년 기간에서 AQI 변수의 계수값이 유의하였다. 이는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이 낮아졌던 COVID19 상황에서도 회계부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대면 방식이 선호되었을 수 있음을 보인다. 다만 표본선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표 12> 강건성분석

패널 A : 가설 1-1.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변수	(1) TOTAL_COMM	(2) TOTAL_COMM	(3) TOTAL_COMM
AQ1	0.594*** (3.55)	0.618*** (3.70)	
AQ2	1.316*** (2.72)		1.408*** (2.90)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Observations	2,641	2,641	2,641
Adjusted R-squared	0.293	0.291	0.290
패널 B : 가설 1-2.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변수	(1) F2F_RATIO	(2) F2F_RATIO	(3) F2F_RATIO
AQ1	0.166*** (3.01)	0.168*** (3.04)	
AQ2	0.078 (0.48)		0.103 (0.65)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Observations	2,641	2,641	2,641
Adjusted R-squared	0.163	0.164	0.161

〈표 12〉 강건성분석 (계속)

패널 C : 가설 2-1.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총 커뮤니케이션 : 연도별 분석				
변수	(1) <i>TOTAL_COMM</i> if year = 2018	(2) <i>TOTAL_COMM</i> if year = 2019	(3) <i>TOTAL_COMM</i> if year ≥ 2019	(4) <i>TOTAL_COMM</i> if year ≥ 2020
<i>AQ1</i>	0.119 (0.38)	1.144*** (3.79)	0.742*** (3.74)	0.443* (1.68)
<i>AQ2</i>	2.959*** (4.40)	0.473 (0.57)	-0.008 (-0.01)	-0.788 (-0.65)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	—	—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47	658	1,994	1,336
Adjusted R-squared	0.257	0.320	0.291	0.273
패널 D : 가설 2-2. 회계부정과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 : 연도별 분석				
변수	(1) <i>F2F_RATIO</i> if year = 2018	(2) <i>F2F_RATIO</i> if year = 2019	(3) <i>F2F_RATIO</i> if year ≥ 2019	(4) <i>F2F_RATIO</i> if year ≥ 2020
<i>AQ1</i>	0.112 (1.07)	0.148 (1.55)	0.179*** (2.75)	0.209** (2.40)
<i>AQ2</i>	0.214 (0.95)	-0.060 (-0.23)	-0.016 (-0.07)	0.198 (0.50)
Control variables	Y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	—	—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647	658	1,994	1,336
Adjusted R-squared	0.268	0.220	0.141	0.102

1) 변수 정의는 <표 4> 참조

2) 괄호 안은 t-통계량임. *** $p < 0.01$, ** $p < 0.05$, * $p < 0.1$

V. 결 론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는 기업 내부에서 재무보고, 내부통제, 기업위험의 관리 등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나, 동시에 비상근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기업 내부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경영진이 배제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으로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공시된 이후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동 커뮤니케이션을 설명변수로 하여 감사품질, 이익반응계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회계감사실무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감사단계 중 가장 핵심적인 감사수행 단계에서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하거나,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건이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포함한 외부감사 실시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횡령·배임 사건과 회계처리기반위준 등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에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뿐만 아니라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회계부정과 커뮤니케이션 빈도의 관계는 제도가 도입된 2018회계연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취지대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실무지침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증가하는 지를 검증한 첫 실증연구이다. 즉,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는 점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제도의 실효성과 더불어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증연구에 있어 연구모형 설계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건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요인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또는 경제적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전후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과 같이 감사인의 감사노력 혹은 감사품질을 나타낸다고 보고 그 결정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후 커뮤니케이션 횟수, 방식, 주요 논의 내용의 결정요인 및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문화나 IT 기술의 발달 등이 감사 감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건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요인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또는 경제적 효과)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연구설계 및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17. “최근 3년간 테마감리 실시성과 및 향후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12. 5.) <http://www.fss.or.kr/>
- 삼정KPMG. 2017. 감사위원회 저널. 제2호.
<https://issuu.com/samjongkpmgaci/docs/kr-samjong-kpmg-aci-journal-2>
- 김유진 · 홍지연. 2021.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의 상호작용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제21권 제1호 : 1-23.
- 김종근 · 김갑순. 2020.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 29-48.
- 박하연 · 이아영 · 전성빈. 2015. “경영자의 자산횡령과 이익조정”. *국제회계연구* 제64집 : 97-126.
- 신혜정 · 안정인. 2023. “기업의 횡령 · 배임 공시와 감사보고서차의 관계”. *회계저널* 제32권 제2호 : 1-28.
- 이성욱 · 김영길 · 김유찬. 2014. “횡령 및 배임사건이 보고이익에 대한 투자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 111-153.
- 이승재 · 김현정 · 최우석. 2021.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이 횡령 및 배임의 적발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3권 제4호 : 1-39.
- 전규안 · 박종일. 2017.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6권 제5호 : 1303-1341.
- 홍준용 · 김선미 · 신상훈. 2022.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행태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47권 제6호 : 163-203.
- 홍지연 · 김유진. 2021.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와의 상호소통 방식 및 사회적 관계가 피감사 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9권 제2호 : 1-26.
- Beasley, M. S., J. V. Carcello, D. R. Hermanson, and P. D. Lapides. 2000.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 Consideration of industry traits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ccounting Horizons* 14(4) : 441-454.
- Brazel, J. F., Agoglia, C. P., and Hatfield, R. C. 2004. Electronic versus face to face review : The effects of alternative forms of review on auditors' performance. *The Accounting Review* 79(4) : 949-966.
- Cho, M., Jo, J., Jung, T., and Kim, N. K. W. 2022. Communication During the Pandemic : Use of Videoconferencing in Audit Committee-Auditor Communication. Available at SSRN 4296139.
- Cho, M., Ki, E., and Kwon, S. Y. 2017. The effects of accruals quality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2(3) : 372-400.

- Choi, J. H., J. B. Kim, and Y. Zang. 2010. Do abnormally high audit fees impair audit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2) : 115–140.
- Cohen, J., G. Krishnamoorthy, and A. M. Wright. 2002.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udit proc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4) : 573–594.
- Eshleman, J. D., and Guo, P. 2014.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managerial incentives in tests of earnings management.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1) : 117–138.
- Fiolleau, K., K. Hoang, and B. Pomeroy. 2019. Auditors' Communications with Audit Committees : The Influence of the Audit Committee's Oversight Approach.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8(2) : 125–150.
- Lynch, A. L., Murthy, U. S., and Engle, T. J. 2009. Fraud brainstorming using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The effects of brainstorming technique and facilitation. *The Accounting Review* 84(4) : 1209–1232.

Financial Fraud and Communication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Park, Jinha* · Shim, Hoshi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ommunication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aligns with the intent of regulations that have strengthened external disclosures. Previous research primarily focused on how communication with governance bodies impacts audit quality, consistently showing results in line with expectations. Unlike these prior studies,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re is increased communication concerning issues when a company experiences financial fraud. The analysis, focusing on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from 2018 to 2021,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ccounting fraud and both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proportion of face-to-face communication. Yearly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fraud and total communication frequency was not significant in 2018, the initial year of the enhanced communication regime, but became significant from 2019 onw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fraud and the proportion of face-to-face communications varied annually, dependent on the sample selectio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appropriateness of audit execution at the stage of communication with governance bodies. Moreover, it extends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a higher audit quality with increased communication with governance bodies, providing evidence for the possible effects of this communication.

〈Key words〉 audit committee-auditor communicat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violations of accounting standards

* Associate Professor, Accounting Department, Soongsil University, parkjh04@ssu.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and Accounting, Kookmin University,
hsshim@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